

의안번호	2201439
의 퇴 인	한병도 의원
회 답 일	2024. 7. 26.
추 계 번호	24F16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법인(의료기관 운영)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법인(의료기관 경영목적)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다자녀 양육자 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740.8억원, 2027년 685.7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136.1억원(연평균 712.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418.5	-427.8	-439.3	-1,285.6	-428.5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2조제8항)	-1.4	-1.4	-1.4	-4.2	-1.4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2조의 2제1항 및 제2항)	-320.9	-280.4	-245.0	-846.3	-282.1
합 계	-740.8	-709.6	-685.7	-2,136.1	-712.0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제1항및제2항(어린이집및유치원에 대한 감면)	○ 어린이집·유치원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2	안 제22조제8항(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3	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2	안 제22조제8항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	
3	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향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의료기관 경영목적)의 취득한 부동산 및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 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

－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지방세법」 제20조)

□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취득세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20.3%)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재산세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4.3%)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향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향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의 최근 2년(2021~2022년)간 연평균액(0.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21년부터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인하

○ 향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2022년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21년 취득분은 향후 5년간 재산세 감면, 2022년 이후 제한 조건 없음

□ 향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12.6%)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어린이집·유치원 취득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다음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등
 - 적용기간: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액은 2020년 109.9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감소추세(연평균 감소율 20.3%)에 있음
 -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부동산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 310.4억원에서 2022년 337.7억원으로 증가추세(연평균 증가율 4.3%)에 있음

[표 2] 최근 3년간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율
취득세 감면액	109.9	95.0	69.7	-20.3
재산세 감면액	310.4	324.4	337.7	4.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및 결과

-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5년 418.5억 원, 2027년 439.3억 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3년간 총 1,285.6억 원(연평균 428.5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취득세 감면실적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20.3%)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4.3%)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3]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	35.3	28.1	22.4	85.8	28.6
재산세 감면액	383.2	399.7	416.9	1,199.8	399.9
합계	418.5	427.8	439.3	1,285.6	428.5

나.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0%(감염병전문병원 40%)을 경감
 - 사회복지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감염병전문병원 60%)을 경감
 - 적용기간: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액은 2020년 2.1억원에서 2022년 0.2억원을 나타내고 있음
 - 2021년부터 취득세 감면율이 50%에서 30%로 인하
 -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 9.2억원에서 2022년 0.9억원을 나타내고 있음
 - 2021년 취득분은 향후 5년간 재산세 감면, 2022년 이후 제한 조건 없음

[표 4]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취득세 감면액	2.1	0.9	0.2
재산세 감면액	9.2	0.4	0.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및 결과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5년 1.4억원, 2027년 1.4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3년간 총 4.2억원(연평균 1.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2년(2021~2022년)간 취득세 감면실적의 연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1년 취득세 감면을 인하(50% → 30%) 감안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2022년 재산세 감면액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재산세 감면대상 조정(2021년 취득분은 5년간 감면, 2022년 이후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 감안

[표 5]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	0.5	0.5	0.5	1.5	0.5
재산세 감면액	0.9	0.9	0.9	2.7	0.9
합계	1.4	1.4	1.4	4.2	1.4

다. 다자녀 양육자 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① 이외의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만, ②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한도로 함
- 상기 이외에 다음과 같은 대체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적용기간: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2020년 629.5 억원에서 2022년 480.7억원으로 감소추세(연평균 감소율 12.6%)에 있음

[표 6] 최근 5년간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율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629.5	597.3	480.7	-12.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및 결과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320.9억원, 2027년 245.0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846.3억원(연평균 282.1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3년(2020~2022년)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실적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12.6%)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7]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	320.9	280.4	245.0	846.3	282.1

다. 추계결과

-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의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740.8억원, 2027년 685.7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136.1억원(연평균 712.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어린이집·유치원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	418.5	427.8	439.3	1,285.6	428.5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	1.4	1.4	1.4	4.2	1.4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320.9	280.4	245.0	846.3	282.1
합 계	740.8	709.6	685.7	2,136.1	712.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